

1회용품 사용규제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

나 근 배 / (사)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상무이사

최근 환경부는 환경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없는 정책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정책 역시 그 규제의 근거와 기준의 불분명함은 물론, 관련업계의 의견 취합과 대안제시라는 필연적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22일 열린 '1회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1. 개요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등'의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 사용자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기업의 구조조정과도 같은 힘을 발휘하면서 기업의 존폐까지 좌우하고 국민의 생활구조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환경을 지킨다는 것, 현 세대 뿐만 아니라 후세대까지 오염되지 않은 국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원부터 줄여야 하고 생활의 편리성만을 추구하여 발생하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일부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업계와 업계간 반목과 환경부와 산업계간 불신이 증폭되어지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가 작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금년 2월 22일 발효된 관련 법규들을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욱 강화하려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 이에 따른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파 만파의 파장이 일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되었듯이 폐기물 정책은 발생원에서 최대한 줄여야 하며 사용된 것 또한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하여야 한다.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1회용품을 줄여나가자고 합의된 전제조건 안에 그 대상품목을 선정하는데는 심도있는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회용품이라고 해서 모든 품목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비경제적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1회용품이 친환경적일 수 있고 국가 경제적으로 볼 때 유익할 수 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줄이는 곳의 한계가 있는 곳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면 재질과 관계 없이 품목에 대해 적용이 되어야 하며 특정 재질만 적용시켜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 법적인 모

[표 1]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5조 (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①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②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99. 2.8) ③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겉면에 표시 권장('99. 2.8) ④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 사용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 1회용품규제대상은 최소한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이상이어야 타당함 적용대상, 적용업종, 구제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제12조 (음식점 등의 규모와 실천 사항) ① 법제15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98. 12.31) 2.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3.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98. 12.31) ② 법제15조 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종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2. 식품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와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98. 12.31)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적판매제조·가공업('98. 12.31) 5.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용품, 예술관련사업 ③ 법제15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2. 1회용품 사용 자제 3. 1회용품의 무상제공 억제 4.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량 설치 운영 5. 코팅·라미네이션된 광고 선전물 ④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는 별표 1의 2와 같다. ※ 별표 비교란에서 품목 결정
적용대상, 적용업종, 구제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실천내용과 1회용품의 종류를 시행규칙에 위임	→ 실천내용과 1회용품의 종류를 별표에 위임

순은 물론 국민적 합의를 도출시킬 수 없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제도가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합의가 도출되어야 지속가능하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또한 관치행정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기존의 제도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관념이나 현실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불 시대를 맞이할 것이며 무한경쟁 시대인 21세기가 도래될 것이므로 이에 맞는 법과 제도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장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할 것이며 본 고에서도

정실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의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2. 1회용품 규제제도의 법적 근거와 현황

2-1. 법적 근거

◎ 모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표 1)

[표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 련 조 항	총 전	환경부개정안(98.6)	최종확정(99.2)
제12조 (음식점 등의 규모와 실천사항) ① 법 제15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객실과 객실 면적이 33㎡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1. 식품접객업소	식품접객업소 ※ 33㎡ → 전매장으로 확대
② 법 제15조 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 200㎡ 이상인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2. 생략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 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매장면적 33㎡ 이상인 사업장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5. 약사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국 6. 예술관련사업 및 서적·잡지소매업	1-2. 생략 3. 매장면적 33㎡ 이상인 도·소매업 4. 환경부안대로 개정 5. 환경부안 철회 6. 환경부안 철회
③ 법 제15조 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1회용품의 사용자제 3. 1회용품의 무상제공 억제 4. 생략	1. 생략 2. 1회용품의 사용자제 3. 1회용품의 무상제공 억제 4. 생략	1. 생략 2. 1회용품의 사용자제 3. 1회용품의 무상제공 억제 4. 생략

2-2. '99년 2월 22일 확정된 관련 법규 개정내용

(98. 6월 개정안을 발표한 후 업계 관계부처, 행정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포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표 2)

2-3. 그 동안 관련 업계의 대응과 환경부가 다시 규제 강화하려는 내용

2-3-1. 그 동안 관련 업계의 대응

① 입법 예고 : '98. 7. 23~8.11

② 업계 대응

◎ 호소문 광고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한국도시락공업협동조합,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한국재생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사)한국포장협회,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한국폴리프로필렌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공동으로 일간 신문 지상 등에 광고 게재

◎ 환경성 평가 연구용역

- 한국환경정책학회에 플라스틱포장재의 환경적 특성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 용역

◎ 관련 업계 피해조사 및 대책 회의(약 20여 차례)

- 도시락공업협동조합, 식품공업협회, 문구공업협동조합, 완구공업협동조합, 백화점협회 등

◎ 정부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건의서 제출

- 청와대,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 환경부, 산자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에 건의서 제출

- 국회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재경위)에 건의

◎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 수차례 회의 개최

-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 플라스틱 포장재의 환경개선 공개 토론회(98. 9.9)

-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98. 11.4)

◎ 외국의 플라스틱 재활용 및 관계 정책 조사

- 일본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관련 정책 조사(98. 11)

- 독일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관련 정책 조사(99. 5)

- 대만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관련 정책 조사('98. 11)

③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98. 10. 26부터 심의하여 1월 29일 최종 확정

※ 업계에서는 부당하지만 재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로 수용

④ 공포 : '99. 2. 22 현행 법 규정 공포 시행

2-3-2. 환경부가 또 다시 규제 강화하려는 내용 [표 3]

3. 업계에서 바라본 1회용품 규제제도의 부당성과 문제점

3-1. 봉투·쇼핑백 제작 업계의 의견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대표적 사례라고 일컬어지는 봉투와 쇼핑백은 환경부가 무상제공 억제 제도를 실시한지 3개월만에 또 다시 그 범위를 50평 이상은 물론 10평 이하인 소매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가동률이 70~85%였던 봉투 제작업체들은 지난 2월 새로운 규제 제도로 가동률이 25~35%에 미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



[표 3] 환경부가 또 다시 규제 강화하려는 내용

종 전	98. 6 입법예고	98. 2 확정	99. 6 다시 제시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제 ◦ 봉투 및 소광백 - 200㎡이상 매장 · 사용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제 - 33㎡이상 매장 · 사용자제 - 약국·서점 ·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제 - 165㎡이상 · 무상판매 억제 - 33㎡~165㎡만 · 사용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소매점 전체매장 · 무상판매 억제 - 약국·서점 · 무상제공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제 1회용 도시락 용기 - 도시락 제조업 · 사용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자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자제 <p>※ 단) 밀 봉 포장, 분해성, 90/100 재활용시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컵·접시·용기 - 식품점객업소, 집단급식소 · 혼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에게 음식물 제공시 제외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제외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제외 ◦ 99. 6 다시 제시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컵·접시·용기 - 식품점객업소, 집단급식소 ◦ 혼례, 회갑연, 상례시 예외조항 삭제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가져가는 경우 합성수지로 제조된 것만 규제

황에서 또 다시 전 매장으로 규제가 확대될 경우 가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가동률이 20%라면 일반적으로 20%정도는 가동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기업이라는 것은 20%의 가동률이라면 적자가 지속되고 이는 곧 도산을 의미하는 것임)

3-1-1. 합성수지봉투 제조업 현황 [표 4]

합성수지봉투는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을 압출기에 의해 용융하여 얇은 필름 상태로 성형하고 이 원단에 필요한 인

쇄공정을 거쳐 밑부분 절단하고 접합하여 만들어진다.

3-1-2. 무상제공 억제 제도의 부당성과 문제점

① 관련 산업피해 극심

□ 구멍가게 소매점까지 무상 제공 억제시 60%이상 수요가 감축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450여 중소합성수지봉투 생산업체의 시설 폐기와 도산이 초래되고 압출기, 인쇄기, 가공기 등 기계제작업체와 전후방 산업까지 약 2,500여 업체가 도산위기 초래함

- 압출기 1,350대, 인쇄기 900대, 가공기

[표 4] 합성수지봉투 제조업 현황

공정	업체 수	주요시설 및 수량	종업원 수
원료	6개사	80,000톤/년	
↓			
압출성형 원단생산	450개사	압출기 : 2,250대 인쇄기 : 900대 가공기 : 1,3503대	12,000명
↓			
인쇄	600개사	인쇄기 : 600대	3,000명
↓			
절단, 접합가공	1,200개사	가공기 : 1,400대	6,000명
↓			
백화점, 도소매점 등	1,460,000업소		

◎ 생산 및 공급량 80,000톤 / 년, 1,200억원 / 년, 수출 9,500톤 / 년, 340억원 / 년
 ◎ 규격 및 공급가격 인쇄품 : 0.04mm×55cm×65cm(32g) 40원, 인쇄품. 0.03mm×35cm×45cm(8.6g) 13원, 검정색 : 2원~5원 매우 다양

1,600대 등 약 1,000억원의 시설 폐기 처분

- 실업자 약 30,000명 발생
- 경쟁력 약화로 국제시장 상실 : 수출액의 약 70% 이상 위축
- 압출기, 인쇄기, 가공기 등 관련 산업과 합성수지산업 위축

※ 봉투와 쇼핑백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멍을 뚫고 손잡이를 만들고 접합하는 등 지체부자유자들과 부녀자들 또 이것을 도·소매하는 영세상인들까지 서민들의 피해 막중 → 이러한 사업으로 20여년동안 생계를 유지하여 왔음.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재활용을 해서 해결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 소비억제책으로 규제한다면 반지, 목걸이, 명크리트 등 필요없는 것을 규제할 것이지 생활에서 꼭 필요한 운반용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은 부당

② 관치행정의 확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역행

□ 규제 범위를 확대시켜 많은 단속공무원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과 무환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 상실

- 단속공무원 소요인원
-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99. 3. 4 환경부 예규 제185호)에 의거 분기 1회 점검시 -

◦ 도매업 (144,622업소×20분)÷60분= 48,207시간

48,207÷8시간=6,026명

◦ 소매업 (768,878업소×20분)÷60분= 256,292시간

256,292시간÷8시간=32,036명

◦ 음식점업 (521,174업소×20분)÷60분= 173,724시간

173,724시간÷8시간=21,716명

※ 자료참고 : 1997년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결과(통계청 유통통계과)

※ 연간소요인원 59,778명×4분기=239,112명
 239,112명×50,000=119억 5,500백만원
 - 분기 1회 단속시 실효성 의문?
 - 모든 소매업, 도매업들은 법을 준수하지 못하여 범법자가 되며 늘 불안한 가운데 생업유지
 - 부조리의 원인만 제공

③ 꼭 필요한 것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제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과 같이 물건을 3개이상 등 어느 부피(무게)이상을 구입시 운반하는 봉투가 꼭 필요하므로 당연히 봉투가 제공되어야 함

④ 상점주에게 국가에서 높은 이윤을 보게 함은 부당

□ 매당 8원~12원에 납품하는 봉투를 20원 또는 50원 등 가능하면 비싼 값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돈이 상점주의 수입으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부담만 가중됨.

백화점 등 대형판매점에서는 외부의 감시를 두려워하여 일부 환경개선이나 복지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도·소매점은 모든 금액이 상점주의 수입재원이 됨 → 봉투 생산업체들이 현행 공급가격보다 2~3배를 더 받아 이 자금으로 재활용사업에 투자하는 방법 필요 → 상점에서 손님들에게 하고 싶은 서비스를 법으로 규제함은 부당

⑤ 국민의 의식수준을 무시한 것이며 봉투의 활용성을 전혀 배려치 않은 것임

□ 이제는 시민의 의식이 높아져 필요 외의 봉투를 무작정 가져가지 않으며 일단 집안으로 들

어온 봉투는 재활용품을 담거나 또 다른 용도로 폭넓게 사용됨 →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시민들에 있는 것이 아님

3-2.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의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도시락용기의 규제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컵, 접시, 용기사용 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

1회용품 사용규제라는 전제 하에 도시락용기를 1회용품으로 규제하는 것은 도시락산업 자체를 없게 하는 제도이다.

왜냐하면 도시락은 필수적으로 포장재인 용기가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1회용품이 아닌 도시락용기를 1회용품이라는 부류에 속하게 하고 도시락용기 중 합성수지 재질 용기만을 규제함에 따라 도시락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으며, 존폐까지 위협하는 본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신청까지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합성수지재질 도시락용기에 대한 규제는 용기를 생산하는 쪽보다 용기를 사용하는 도시락업계에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도시락자체가 보온성, 위생성, 견고성, 경제성, 편의성과 일시에 다량 공급능력 등이 요구되고 이러한 모든 요구들을 합성수지재질 도시락용기만이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환경부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표 5] 합성수지도시락용기 제조 및 유통 현황

공정	업체수	주요시설 및 수량	종업원수
원료(합성수지)	6개사	5,000톤/년	
↓			
압출성형 (시트원단생산)	30개사	압출기 : 60대	900명
↓			
진공성형	45개사	성형기 : 90대 금형 : 3,500조	300명
↓			
도시락제조업, 식품점	2,500업소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갈 경우 예외로 인정하였던 것을 합성수지재질 용기만 규제하는 것으로 또 다시 규제강화책을 발표하자 영세한 도시락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다.

3-2-1. 합성수지도시락용기 제조 및 유통 현황[표 5]

3-2-2. 합성수지도시락용기 사용규제의 부당성과 문제점

① 도시락의 특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체 용기가 개발되어 있지 못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 불가능

□ 도시락은 공공집회나 체육대회 등 각종 모임의 중식 및 일반 서민의 간편식으로 일반서민의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당해 나라의 음식을 외국으로 진출시킬 수 있는(예:햄버거) 음식으로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발전 육성시키고 있음.

우리나라 음식도 김치를 비롯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실정이며 수분이 많고 반찬의 가짓수가 많은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상 합성수지제가 아니면 발전에 한계가 있음

◦ 도시락의 종류 : 반찬의 종류에 따라 100여가지의 규격이 있음

◦ 밥이 용기에 묻지 않아야 되며

◦ 운반이 용이하도록 견고성유지와 가격도 경제성이 있어야 함

◦ 보온성, 위생성, 디자인성도 요구되며

◦ 김치국물 등이 용기에 배지 말아야 함

따라서 현재 합성수지용기 이외에는 상기 제반사항 충족이 불가능

② 문제는 재활용인데 합성수지 용기도 사용 후 세척하여 다시 재생원료를 쉽게 만들 수 있으며 발열량이 높아 독일, 일본에서와 같이 석탄 대체연료 등으로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

□ 재활용 문제는 펄프용기도 동일하며 합성수지 용기의 경우 발열량이 높아 오히려 유익

③ 원자재조달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전과정 환경영향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시 오히려 합성수지재질이 친환경적임[표 6]

[표 6] 생산과정의 환경성 비교

● 1000매당의 트레이 비교				● PSP와 종이 비교 결과				
구분	PS트레이	종이트레이	PSP/종이					
중량	4.4kg	21.9kg	1/50					
천연재료	원유 4.4kg	원유 11.4kg	-					
중량별원료	발포제 0.156	고지 17.70						
에너지소비	47.0×10 ³ kcal	145.5×10 ³ kcal	1/3.1					
대기오염물	CO ²	14.50kg	44.16kg					1/3.1
	NO ²	0.015kg	0.112kg					1/7.5
	SO ²	0.074kg	0.081kg					1/1.1

[표 7] 같은 크기의 트레이(135mm×135mm)를 태울 때에 발생하는 트레이 장당 열량, 잔재량, 가스량의 일례

트레이	1장당 중량 (g)	발열량 (cal)	잔재량 (mg)	이산화탄소 소계(mg)	일산화탄소 소계(mg)	염화수소 (mg)	유황산화물 (mg)	유황산화물 (mg)
PS제	3.3	34,551	0.04	5,775	561	배출안함	배출안함	배출안함
미백지	8.3	42,247	0.37	13,280	7,162	배출안함	5.81	배출안함
종이	10.1	39,995	0.75	17,170	1,150	배출안함	10.10	배출안함

○ 소각시의 평가 [표 7]

같은 크기의 트레이(135mm×135mm)를 태울 때에 발생하는 트레이 장당 열량, 잔재량, 가스량의 일례

④ 도시락업계에서도 환경부의 합성수지용기 규제 정책이 부합되도록 5년이상 노력하였으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합성수지 재질용기의 사용규제를 더욱 확대한다면 영세한 도시락업체들은 사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음

<그 동안의 노력>

- '95. 2. 6 합성수지도시락용기 사용규제 관련법 제정('95. 8. 1부터 시행)
- '95. 8. 1~'96. 2. 6 개발이 안되어 1차 단속 유예(환경부)
- '96. 2. 6~'96. 8. 6 대체용기 개발지연으로 6개월간 계도중심으로 지도감독 시행(환경

부)

- '96. 8. 6~'97. 2. 6 6개월간 단속유예(환경부)
- '97. 1. 23 회용품 사용단속 철저히(환경부)
- '97. 2. 25/3. 19 합성수지도시락용기 계속 사용 건의(도시락조합)
- '97. 5. 9 대체용기의 개발추이를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환경부)
- '98. 6. 도시락제조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까지 확대 입법 예고
- '99. 2. 22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까지 규제 시행
- ※ 그러나 대체용기 개발문제 상존
- 일본의 경우 90%이상 이 합성수지 용기임
- '99. 6. 환경부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까지 규제 확대 발표

- ⑤ 형평성 문제 대두 및 영세상인과 서민 피해
 - 도시락용기 중 유독 합성수지만을 규제하는 것도 형평성이 결여되었지만 대기업이 생산하는 햇반 등의 라면용기는 규제하지 않고 영세서민사업인 도시락, 식품점, 즉석 판매제조업종만 규제하는 것은 부당
 - 도시락은 학생과 서민층이 애용하는 것으로 포장비 상승시 이들의 부담만 가중시킴
 - ※ 이러한 상황에서 단속을 받고 있어 늘 불안한 상황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에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는 조처 요망

3-3.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사업장에서 혼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 음식물 제공시 1회용품, 접시, 용기 사용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사업장에서 1회용품컵, 접시용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예외조항을 두어 일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게 되는 관혼상제시 예외로 하고 있어 그 예외 조항을 금번에 폐지시켜 규제를 확대하려는 것이 환경부의 견해이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관혼상제시 1회용품, 접시, 용기 사용규제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

- ① 비경제적,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오히려 악영향 초래
 - 일시에 3~4백명 이상이 식사를 하여야 하므로 그 많은 컵과 접시를 항상 준비할 만한 재정적 여유와 장소도 문제이며, 사용후 빨리 세척하여 다음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해 일손, 용수, 건조, 위생처리 등을 위한 많은 인건비와 시간이 소요되고 폐수 문제 등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표 8]

- ② 문제가 처리에 있다면 재활용대책을 강구하여 해결
 - 규제의 목적이 환경문제에 있다면 사업장 내에서 우유팩과 같이 깨끗이 처리가 가능하며 깨끗한 상태이므로 충분히 재활용 가능
 - ③ 단속공무원의 감시가 가중되어 국가경제적 손실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는 위생검사 등 화재감사시 수많은 공무원의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1회용품 사용검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과 갈등만 심화될 것임
- 단속공무원 소요인원(매분기 1회)
음식점 (521,174업소 × 20분) ÷ 60분 = 173,724시간
173,724시간 ÷ 8시간 = 21,715명
21,715명 × 4분기 = 86,862명
※ 연간 86,862명 × 50,000 = 43억원 소요
- ④ 국민위생문제 대두 예상
 - 물 사정이 좋지 못한 곳과 세척을 잘못하고 관리를 잘못할 경우 간염 등 국민위생문제

[표 8] 일회용과 다회용 용기의 경제성·위생성·환경성 비교

구 분	일회용접시(PSP)	다회용접시(도자기)
구입가격(10개)(17.8Cm)	380~420원	30,000~45,000원
세척을 위한 물 사용	-	15l
세정제 사용	-	1/2스푼
인건비(시간)	-	3분 소요
건조 및 소독 위한 전기	-	미상
폐수정화비용	-	미상
장소확보 등	-	미상
최종처리	에너지자원으로 활용	매립

발생 우려

※ 질병들이 전염되어 오히려 1회용 권장

⑤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 차질 우려

□ 많은 인원이 일시에 몰리게 되므로 1회용 컵, 접시용기사용 불가피

※ 현재에도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사업장에서 규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별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

3-4. 플라스틱업계에서 본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에 대한 의견

3-4-1. 플라스틱에 대한 잘못된 인식

플라스틱은 20세기의 소재라고 불릴만큼 인류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가히 생활의 혁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전자, 항공 및 우주산업까지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한겨울에도 싱싱한 야채를 식탁에서 대할 수 있게 하였고 한여름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어느 곳에서나 대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음식을 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년도 합성수지의 총생산량은 7,541천톤이며 이중 49%인 3,696천톤이 수출되고 121천톤 수입되어 국내수요량은 3,966천톤이다.

이 합성수지 중 17%인 655만톤이 플라스틱 제품화되어 수출되고 일부가 수입되어 국내수요량이 되며 국내 수요량 중 건축자재 등 내구성제품이며 이중 폐기물도 발생하는 량은 2,740천톤으로 추정된다.

▶ 발생대상량은 한국환경과학연구소 연구자료에 의해 수요량의 약 68% 적용

이중 1996년도에 486천톤이 재활용되어 재활용율이 16.1%이었으며(환경부 : 제2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 1997년도 500천톤이 재활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1997년도 재활용률은 18%에 이른다(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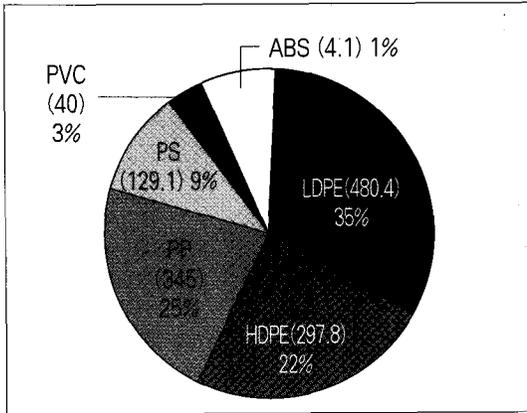
생활계 폐플라스틱의 수지별 수요현황은 (표 9)에서 보는바와 같이 LDPE가 35%, HDPE 22%, PP가 25%이며 PVC는 3%이다.

PVC는 년년간 662천톤이 생산되나 대부분 파이프, 바닥재, 레자, 창틀 등 건축재이며 일부 계란난좌나 필름류가 생활에 사용되고 있다.

(표 9) 폐플라스틱 발생량과 재활용 실적

구분 년도별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량	발생대상량	생활폐플라스틱 발생량	재 활 용 량	비교(재활용비율) (재활용량/발생대상량)
1990	2,935	312	474	2,773	1,885	1,045	176	9.3%
1991	3,731	248	91	2,988	2,031	1,030	174	8.5%
1992	5,169	16	1,957	3,378	1,943	1,154	173	8.9%
1993	5,777	185	2,335	3,627	2,392	1,312	207	8.5%
1994	6,223	159	2,373	4,009	2,769	1,471	374	13.5%
1995	6,689	195	2,767	4,117	2,800	1,540	440	15.7%
1996	7,260	229	3,110	4,441 PET 62,617 EPS 40,130포함 농업용 923,576	3,020	1,640	486 PET 14,044 EPS 13,280포함 농업용 44,891	16.1%
1997추정	7,541	11	3,696	3,969	2,740	1,361	500	18.0%

[표 10] 폐플라스틱 발생량과 재활용 실적



'97년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플라스틱류 재활용량은 271천톤이며 (환경부 :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98)이 수량은 일부 장난감 등을 제외하면 용기 등 포장재이다.

이와 같이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플라스틱이 사용후 처리과정에서 재질 선별작업이나 이물질 제거작업이 까다로워 재활용율이 낮았으며 극히 일부분인 PVC 에서 소각시 염소가스 발생으로 다이옥신 문제가 대두되는 등 문제가 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 이제는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이 또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으며 플라스틱제품이 오히려 산림자원과 지하자원 등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친환경적 소재로 인식되고 있다.

· 플라스틱은 가죽과 뼈까지 인류에게 제공하는 소와도 같이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된 후 하나도 남김없이 인류에게 활용된다.

· 석유를 직접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보다 생활에서 몇 번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에너지자원으로 활용되어 매우 경제적이며 친환경적 물질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플라스틱에 대한 올바른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 플라스틱 중 겨우 4~5%를 점유하고 있는 PVC로 인해 전체 플라스틱이 조각시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의식하고 있으며

· 쓰레기를 주로 매립 처리함에 따라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부피가 크므로 공해물질이라는 인식에 감싸여 있는 실정이다.

독일 플라스틱 전문처리기관인 DKR에서 1998년도 플라스틱 포장재의 93%를 재활용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2천년대 초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90%로 국가에서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일련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규제 정책들은 그 옛날, 들에서 식사할 때에서 종지박이나 쪽지바가지에 국이나 음식을 담고 PP선으로 장바구니를 만들고 칩줄기로 동태 코를 끼워 다니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들게 한다.

플라스틱은 산업이 발전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사용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사용 후에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인 플라스틱은 눈에 많이 띄고 썩지 않으며 조각시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산림자원과 지하자원을 더 많이 훼손하게 될 것이며 무한경쟁시대인 국제시장에서 낙오자가 될 것이다.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계속 유지하면 유지한 만큼 재활용기술 개발을 비롯한 재활용산업

이 퇴보되어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 크나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3-4-2. 현행 플라스틱에 대한 수많은 제도의 문제점

환경부가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너무나 많은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많은 제도 중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약 200억원의 「부담금」이 약 20년간 지불되고 있는가 하면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감량화목표율이행」,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 「제2종 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 「합성수지용기의회수처리의무규정」 등이 있으며 금번에 제기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도 플라스틱제품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제도가 있는 것도 문제이다.

각종 규제제도들이 언제 또다시 강화될지 몰라 플라스틱업체들은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실정이다.

플라스틱 업계는 1995년 2월 1회용품 사용규제 중 플라스틱 봉투와 도시락 용기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당성을 1995년 12월 당시의 행정쇄신위원회에 철회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어 왔다.

- '96년 2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합성수지 봉투와 도시락용기 규제제도는 재활용이 전제가 되고 분리수거의 가능여부와 이로 인한 비용부담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용자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범기간 중에도 불이행에 따른 조치 등도 유보토록 하였다(현재 플라

스틱재활용 협회에서는 서울시 4개 구청에서 PE봉투 분리수거시범사업을 3년이상 꾸준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 '96. 7. 25일 약 1년여동안 협의하여 고시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합성수지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지침을 '98년 6월 환경부가 갑자기 100% 감량화하는 것으로 개정안 입법예고하였으며

- 금번 1회용품 규제강화 규정도 '98년 6월 환경부가 규제강화 안을 입법 예고하여 관계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합의결정 '99년 2월 22일 공포된 것이며 5개월도 안되어 다시 개정하려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정부와 합의된 사항이 또 다시 반복되고 이행되지 않아 정부에 대한 불신만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관련 산업의 도산은 물론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바람직한 1회용품 규제제도의 개선방향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재활용을 극대화시켜야 하며 최종적으로 매립과 소각이라 불 때 발생량을 줄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경우 포장방법이나 1회용품을 줄이지는 기본적인 합의는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포장방법, 포장횟수, 포장규격에 대한 규제 범위도 한계가 있으며 1회용품 사용자제 규정에서도 줄어나갈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1회용품의 사용자제가 되어야 사용을 전면 규제해서는 안 된다.

규제를 해야 한다면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자료가 충분하여야 하며 원자재조달에서부터 최종 폐기물 처리까지의 전과정환경평가(L. C. A : Life Cycle Assessment)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

앞에서 제기되었듯이 모범에서 사용자제로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규제를 강화시켜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시행규칙에서 또 다시 강화시켜 별표에 이양하였으며 무시무시한 무기를 별표 비고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에서 산업의 구조조정까지 하게되는 품목선정권 등 일련의 업무를 가지게 되었으며 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도 때도 없이 법을 개정하고 있어 이로 인

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업체간의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국민소득은 8,500불도 되지 못하며 선진국도 아니다.

아시아 주에서조차 경쟁력을 갖춘 국가도 아니며 더욱이 IMF라는 국난에 처해 있는 국가이다.

중소기업들과 영세 상인들이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폐플라스틱의 경우 깊은 땅속에서 석탄을 한 덩이 한 덩이 캐어내는 심정으로 재활용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수입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신규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환경을 사랑한다.

그리고 산업도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모두 같은 국민이며 후세를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며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술로 세계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 ☐

제3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 공모

포장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자긍심을 갖게 해 줄 한용교포장인상이 세번째를 맞이하여 수상자를 공모합니다.

99년 포장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포장인 가운데 연구개발, 품질관리, 경영, 영업, 포장장학금 등 5개분야 7명을 선정, 시상하게 될 「제3회 한용교포장인상」이 포장인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사) 한국포장협회